

먹는물 관리법에 관하여

- 먹는물관리법 개정의 주요내용 -

김 원 민

환경부 음용수관리과

1. 제도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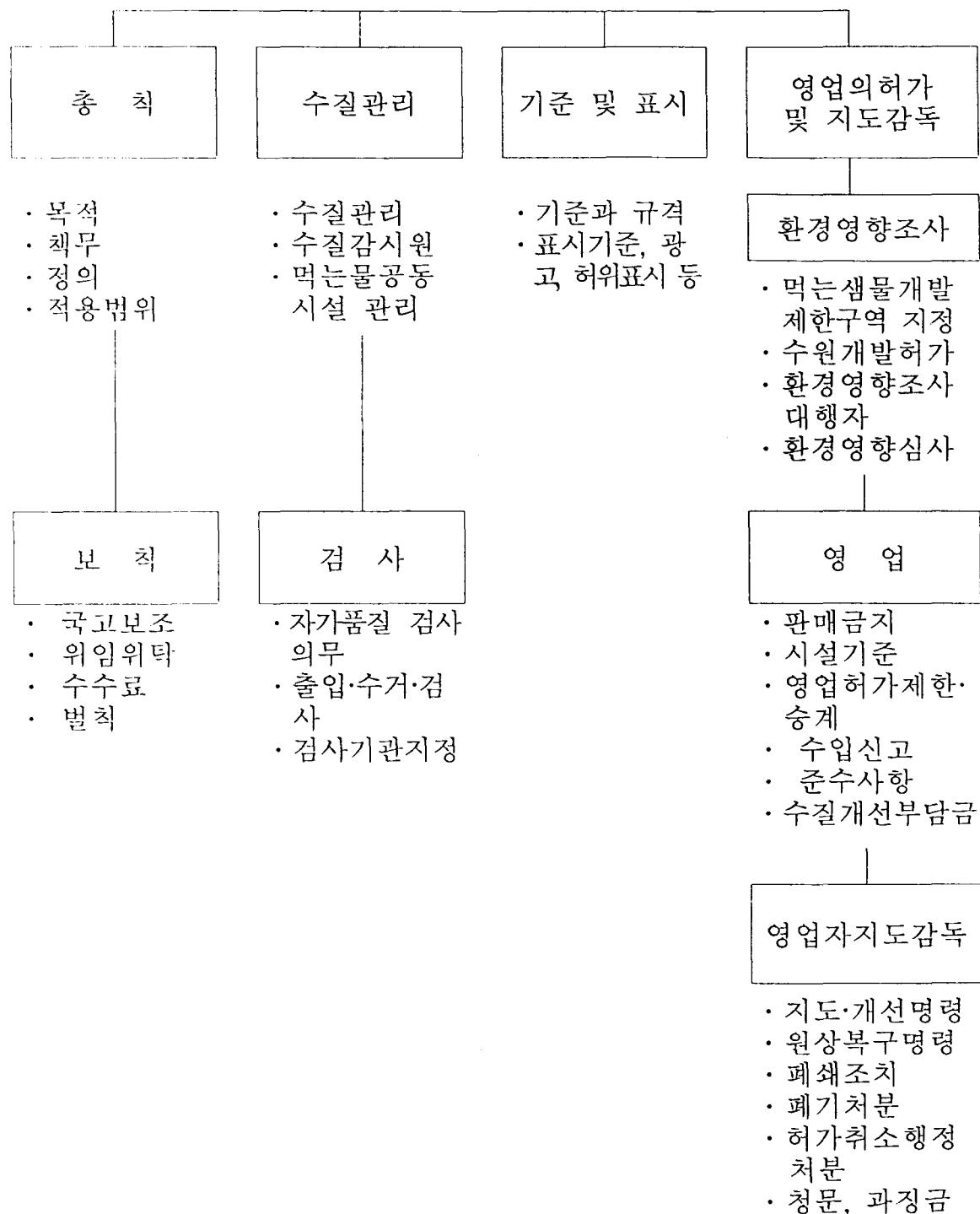
- 수돗물 이외에 개인이 생산·판매하는 먹는샘물에 대한 제도의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74년 8월 식품위생법시행령에서 허가업종으로서 “보존음료수”제조업을 신설하므로써 도입되었다. 1975년 9월에는 보사부고시로 “보존음료수제조업”은 전량 수출조건으로만 허가토록 제한되었다 (1976.1에 ‘다이아몬드정수’가 최초의 허가를 받음)
- 1991. 3월에는 보존음료수의 명칭이 “광침음료수”로 변경되었고 1995년 1월에는 다시 “먹는샘물”로 바뀌었다.
- 이렇게 먹는샘물의 시판은 수돗물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관점에서 제도적으로는 국내판매가 허용되지는 않았으나 현실적으로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1989년 이후 몇번의 수질오염사고, 수돗물오염 파동으로 먹는샘물을 마시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먹는 물 관리제도는 법과 현실 사이에서 표류해 왔다.
- 1989년 2월 당시 보존음료수의 시판허용을 검토중이라는 보사부발표가 나왔으나, 1989년 8월 발생한 수돗물 오염사고를 계기로 시판불허 쪽으로 바꾸었으며, 1990년 7월에 다시 시판허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사부 발표에 이어 1991년 4월에는 시판 유보 입장이 밝혀졌고 1991년 8월에는 다시 허용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1992년 8월에는 시판여부를 1993년 초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 이같이 국내시판 허용과 불허라는 상반된 방침이 반복되면서 무허가업체가 난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이아몬드정수 등 4개 업체가 먹는샘물의 국내시판 불허는 위헌이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1994년 3월 8일 대법원에서는 정부가 먹는샘물의 국내시판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직

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먹는샘물의 국내시판을 허용한다는 발표와 함께 기존 허가업체에 대하여는 전량수출이라는 허가조건을 철회하고 신규업체는 관련 제도를 정비한 후에 허가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1994.3.16)

- 1994년초 낙동강, 영산강 수계의 식수오염 사고를 계기로 1994. 5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수질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 되면서 먹는샘물의 관리업무도 보사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 이에 환경부는 수도법상의 수돗물의 수질기준, 식품위생법상의 광 친음료수제조업의 시설기준, 공동위생법상의 음용수의 수질기준과 수처리제와 관련한 규정들을 수렴하여 체계화 하고, 음용수에 대한 수질관리와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음용수관리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1994년 6월 2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 법안은 국회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먹는물관리법’으로 명칭이 바뀌어 1994년 12월 16일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되고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08호로 제정·공포되었다. 환경부는 동법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훈령, 지침 등)의 제정을 마무리 하고,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므로서 20년 이상 끌어온 먹는샘물에 대한 혼란을 마무리짓고 제도를 정비하였다.

2. 현행 먹는샘물 제도

가. 현행 먹는물관리법의 체계(본문 총 51개조, 부칙 7개조)



나. 주요내용

○ 정의 및 수질기준

먹는샘물은 암반대수층내의 지하수,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물리적 처리를 통하여 먹는데 적합하도록 제조한 샘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먹는샘물의 수질 기준은 대부분 수돗물 수질기준(45개항목)을 적용하되 염소소독 등 화학적처리가 허용되지 않는 먹는샘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미생물 등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고 있다(먹는샘물 원수:47개항목, 제품수:51개항목)

○ 제조업 허가

먹는샘물제조업을 위하여는 사업개요, 수질오염방지계획, 원상복구 계획 등을 마련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수원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서를 작성하여 각 환경 관리청의 심사의견을 들어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먹는샘물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기타

-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먹는샘물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로부터 판매가액의 20% 상당액을 수질개선부담금으로 징수
- 먹는샘물의 광고는 상대적으로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광고효과가 큰 TV를 통한 광고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제조방법 및 품질 등에 관

하여 허위 또는 과대의 표시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수입되는 먹는샘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추진일정

- 먹는물 수질의 안전성 확보와 먹는물 가용자원의 지속적인 보전·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하수 등 샘물의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수기의 성능과 품질의 관리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안의 공청회(1996. 5.21) 입법예고 ('96.6.10) 등을 거쳐 1997. 8. 28에 법률 제5394호로 공포되었다.

나. 주요내용

- 먹는샘물의 오존처리허용(제13조,제29조)
 - 샘물의 규정을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원수”로 하고, 먹는샘물을 “샘물을 먹는데 적합하도록 물리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로 정의하고, 그 종류, 제조방법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즉, 먹는샘물의 처리방법으로 물리적처리 이외의 방법(오존처리에 한함)도 허용하여 ‘천연광천수’와 ‘병물’로 구분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모든 종류의 물을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 WTO 협정취지를 수용한 것이다('95.11 카나다의 의견)

- 샘물개발제한구역 지정권자의 확대(제8조)
 - 환경부장관 뿐만아니라, 시·도지사도 수원의 수질오염지역이나 오염우려지역 또는 샘물개발로 인하여 지반침하 등 자연생태계의 현저한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샘물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샘물개발허가 범위확대(제9조)
 - 현재는 먹는샘물제조업을 위하여 수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만 허가를 받고 있으나, 청량음료, 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먹는샘물과 같이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샘물개발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 먹는샘물 개발허가 절차의 개선(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 수원개발 허가후 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허가절차를 환경영향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에 허가도록 함.
 - 샘물개발허가를 가허가와 허가로 구분하여 샘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샘물개발 가허가를 득한 후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영향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고, 샘물개발로 인하여 지하수자원 또는 지표수의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샘물개발허가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수원개발허가 ↓ 환경영향조사 및 심사 ↓ 먹는샘물제조업 허가	샘물개발가허가 ↓ 환경영향조사 및 심사 ↓ 샘물개발허가 ↓ 먹는샘물제조업허가

- 정수기의 제조·수입에 대한 신고제 도입(제18조)
 -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허위표시 금지 등 정수기관리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정수기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일부 정수기는 과도한 고가품 생산으로 과소비를 조장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 정수기의 제조·수입에 대한 신고시 검사성적서 첨부, 허위표시 금지등 최소한의 법적규제를 도입한 것임.
- 먹는샘물 개발의 사후관리 강화(제19조의2)
 - 먹는샘물제조업자로 하여금 수질측정 결과를 제출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분석하여 먹는샘물의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수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법 개선(제28조)
 - 먹는샘물의 업체별 판매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을 샘물용기 규격별 평균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일정금액을 부과하도록 하므로써 부과의 형평성을 유지도록 함.
- 수질개선부담금 용도의 구체화(제28조의2)
 - 먹는샘물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를 구체화 함(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사업비의 지원, 먹는물의 수질검사 실시비용의 지원, 기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 벌칙신설 및 강화(제48조, 제49조)
 -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조사서 항목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허위작성시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조사서 부실작성을 예방
 - 취수량제한등의 허가조건 위반시 벌칙신설
 - 신고하지 않고 정수기제조업, 수입판매업을 한 경우 벌칙신설

다. 하위법령 추진상황

- 1997. 8. 28에 공포된 개정안은 부칙 제1조에서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시행일은 1997. 11. 29부터이다. 이에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을 성안하여 법제처 심사중에 있다.
- 시행령에서는 수원개발 허가를 받을 자를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 청량음료 및 주류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1일 취수능력 300톤이상의 지하수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로 구체화 했다. 또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대상중 수출하는 먹는샘물, 우리나라에 주재하는외국공관 군대에 납품하는 먹는샘물에 대하여는 면제도록 하였다.
- 이밖에도 각종 고시도 마련중에 있는 바, 이러한 것이 마무리되어 이번에 개정된 법안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이다.